

# 세차례 독대에도 청탁 증거없자 '0차 독대' 만든 특검

## 이재용 재판 돌아보기

### ● 독대와 청탁

재단 출연한 기업 중 삼성만 기소  
1차 독대 5분간 즉흥적으로 진행  
개별현안서 청탁 없었다는 판결  
방문기록 없어... 이재용 결백 호소

지난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인용하면서 "기업의 재산권과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장경제질서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내 기업들에 압력을 가해 미르·K스포츠 재단 등에 출연금을 내도록 했다는 의미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을 진행하며 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규정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삼성그룹은 미르 재단, K스포츠 재단 기금 조성 및 영재센터 후원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며 다른 기업과 다르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재단에 출연한 기업은 다수 있었지만 기소는 삼성에 국한됐다. 삼성 외 기업들도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냈는데 특검은 왜 삼성만 문제 삼을까.



2014년 9월 15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첫 독대를 가진 날이다. 사진은 개소식 당시 모습. /뉴스1

#### ◆대통령 독대서 삼성 청탁 증거 못 찾아

이에 관해 특검의 입장은 '삼성은 다른 기업과 다르다'이다.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를 가지며 대통령에게 출연금 등의 요구를 받았고, 이를 들어줄 경우 필요한 도움을 얻을 것으로 생각해 적극 응했다는 것.

1심에서 인정된 독대는 2014년 9월 15일, 2015년 7월 25일, 2016년 2월 15일 총 세 차례다. 2014년 1차 독대는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약 5분에 걸쳐 진행됐다고

알려졌다. 첫 독대에 면담 시간도 워낙 짧았기에 인사와 승마협회를 맡아달라는 정도의 요청을 들었을 뿐 청탁은 오가지 않았다는 것이 삼성 측의 설명이다.

2015년 2차 독대와 2016년 3차 독대는 청와대 안가에서 이뤄졌다. 1심 재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2차 독대에서 승마협회 회장을 맡은 삼성이 승마 선수들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질책을 받았고 3차 독대에서는 JTBC의 보도 태도로 항의를 받았다. 이 부회장은 "도움을 받을 생각은 없었지만, 그런 말을 할 분위

기도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1심 판결에 따르면 청와대는 2차와 3차 독대를 준비하며 박 전 대통령이 참고자료로 볼 '대통령 말씀자료'를 만들었다. 그 안에 삼성의 다양한 현안이 포함됐지만, 정작 삼성에 기업 현안을 묻지는 않았다. 청와대가 같은 시기 독대를 한 다른 기업들에 현안 자료를 요청해 받은 것과 달리 직접 현안을 조사해 만든 셈이다.

이 부회장의 진술이 명확했고 독대에서 청탁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1심 재판부는 독대를 통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다. 독대에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하거나 승마지원을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 이 부회장이 이견회 회장의 역할을 물려받아 야 한다는 현안이 있던 것을 청와대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됐지만 삼성 입장에서는 아무런 부탁을 하지 않았음도 입증된 셈이다.

#### ◆또 다른 독대 만들어낸 특검

개별 현안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면 삼성이 유죄 판결을 받을 이유는 없다. 때문에 특검은 항소심에서 '0차 독대' 카드를 꺼내들었다. 기준에 알려진 1차 독대 이전인 2014년 9월 12일 청와대 안가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불러 사전 독대를 가졌다는 것. 0차 독대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면 이후 독대에

서 청탁이 오가지 않았던 것 또한 특검의 주장에 부합하게 된다. 이미 오고간 청탁을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은 2014년 하반기 청와대 안가에서 박 전 대통령이 총수들과 독대를 가졌다고 증언했다. 안 전 비서관은 "이 부회장에게 휴대폰 번호가 적힌 명함을 받아 저장했다"면서도 정확한 시기를 특정하지 못했다. 특검을 이 증언과 안봉근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메모를 기반으로 2014년 9월 12일 0차 독대가 있었다고 특정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2차 독대 당시 청와대 안가를 처음 갔기에 위치를 몰라 전화로 길 안내를 받았고 3차 독대에서는 스스로 찾아갔다고 "0차 독대가 있었는데 이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내가 치매에 걸린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 부회장의 명함이 전화번호가 적혀있지 않은 것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 부회장은 "삼성에서 신형 스마트폰이 나올 때마다 사용하느라 번호를 자주 바꾼다"며 "명함에 번호를 넣지 않고 지인들과도 메신저로 연락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 경호처의 2014년 9월 12일 청와대 안가 출입기록에서 박 전 대통령의 출입 기록은 있었지만 이 부회장의 안가 출입은 확인되지 않았다.

/오세성 기자 sesung@metroseoul.co.kr

# MB실소유주 의혹 다스, MB가 만든 동반성장 점수는 '낙제'

동반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2015년 최하위 단계 '보통' 부여  
2016년 한단계 올랐으나 하위권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실소유주గా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 다스(DAS)가 하청업체와의 동반 성장에서 사실상 '낙제점'을 받는 등 대·중소기업 상생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

로 파악됐다.

15일 동반위에 따르면 다스는 2014년 당시 처음으로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이전에는 동반성장 지수 평가에서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대 기업을 주로 포함시켰으나, 이를 '매출액

순위 450대 기업'까지 확대하고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중견기업과 대기업 1차 협력사 비율을 늘리면서 현대·기아차 1차 협력사인 다스도 포함됐기 때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다스는 MB의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07년 당시 매출액(연결 기준)이 4880억원이었다.

그러다 급성장하며 2011년에는 7367억원으로 매출이 늘었고,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에 포함되기 직전인 2013년에는

1조111억원까지 커졌다. 2016년 말 기준 다스의 매출액은 1조2727억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다만 '2014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선 다스 등 새로 포함된 20개 중견기업은 시범조사 대상이어서 평가 결과를 해당 기업에 통보만하고 일반에는 공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다스에 대한 실제 동반성장 지수 평가 결과는 2015년에서야 공표됐

다. 당시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를 발표하면서 다스에 대해서 '보통'을 부여했다.

하지만 보통은 최우수-우수-양호-보통의 네 단계 등급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사실상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무시했다는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스는 이듬해인 2016년 평가에서도 '보통'을 받았다. 이 때는 보통 등급 아래에 '미흡'이 추가돼 표면적으로 한 단계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도 보이지만 155개 공표 대상 기업 중 보통이 12곳, 가장 낮은 미흡이 10곳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동반성장과 관련해서 '낙제점' 수준의 평가를 받은 셈이다. /김승호 기자 bada@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17-4677호(2017.10.17)

Cigna 라이나생명

**그래서, 저 박상원과 라이나생명이 든든한 암 보장을 선언합니다!**

[라이나생명(무)플러스암보험(갱신형)]

암, 치료법이 좋아지는 만큼 대비해야 할 비용도 늘었습니다. 비급여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도 생각한다면 든든한 보장의 라이나플러스암보험에 지금 전화주세요!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

박상원 / 생명보험판매자격보유

☎ 24시간 무료상담신청  
지금 전화 주세요  
**080-763-7070**

• 본 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 암 보장 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임  
• 기존보험 계약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보험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람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음